

# 2022년 검정시험 조정(2022년 필기시험 미 실시)제도 안내

「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(공고 제2020-177호)」에 따른  
“**검정시험 조정제도**”를 아래와 같이 **2022년부터 도입**하오니,  
해당종목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## □ 검정시험 조정제도

- 검정수요, 산업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경우 필기시험을 격년제(홀수년도 시행, 짝수년도 미시행)로 시행하는 제도

### < 관련 근거 법령 >

#### ▶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(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)

- ① 주무부장은 매년 1회 이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국가기술 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▶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1조(검정의 시행 등)

- ①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 
1.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

- (대상) 최근 3년간 필기시험 연평균 응시인원이 50명 미만인 종목  
- 2022년 검정시험 조정제도 적용 대상 종목 [별첨] 참조
- (도입시기) 2022년부터(2022년 필기시험 미시행)
- (실기시험 기회 제공) 검정 시험 조정 종목의 경우에도 실기시험은 실시하여 필기시험 면제자에게 자격 취득 기회 제공

**HRDK** 한국산업인력공단

**별첨 2022년 검정시험 조정(2022년 필기시험 미 실시) 제도 적용 대상 종목**

연번	등급	자격명	3년간('17~'19년)	
			필기응시인원(명)	취득자(명)
1	기능사 (10)	석공예기능사	3.1	12.4
2		광학기능사	6	0
3		원형기능사	8.8	11
4		판금제관기능사	11.8	17
5		보석가공기능사	19.4	15
6		임산가공기능사	19.7	3.7
7		철도차량정비기능사	21.4	2.7
8		광고도장기능사	25.1	19.7
9		염색기능사(날염)	25.4	23.7
10		철도토목기능사	40.7	10
11	산업기사 (16)	판금제관산업기사	8.4	1.7
12		철도차량산업기사	9	0
13		임산가공산업기사	16.1	1.7
14		주조산업기사	18.4	7
15		포장산업기사	18.7	2
16		일식조리산업기사	21.1	3.4
17		섬유디자인산업기사	30.4	16.4
18		섬유산업기사	30.4	5
19		배관산업기사	31.7	3.4
20		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	33.7	6
21		소음진동산업기사	34	4.4
22		향료표지산업기사	35.4	5
23		화약류제조산업기사	43.4	9.7
24		교통산업기사	47.1	6.7
25		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	48.7	16
26		피아노조율산업기사	49.8	16
27	기사 (8)	철도차량기사	8.8	0
28		궤도장비정비기사	17.8	2
29		해양공학기사	18.8	0.7
30		해양자원개발기사	23.4	6.4
31		농업기계기사	26.7	3.7
32		제품디자인기사	30.7	11
33		섬유기사	33	4.4
34		수산제조기사	34	6.7
35	서비스 (1)	컨벤션기획사1급	10.7	1.4